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76호

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76호, 2021.11.1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9일
보건복지부장관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	79.7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92.1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93.0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95.4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51.9원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97.6원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91.0원

부 칙
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“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”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현행과 같음 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70%;">유형별 분류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점수당 단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8.4원</td> 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0.2원</td> 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0.7원</td> 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2.6원</td> 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46.1원</td> </tr> <tr> <td>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4.2원</td> </tr> <tr> <td>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8.5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	78.4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90.2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90.7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92.6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46.1원	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94.2원	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88.5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70%;">유형별 분류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점수당 단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79.7원</u></td> 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2.1원</u></td> 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3.0원</u></td> 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5.4원</u></td> 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51.9원</u></td> </tr> <tr> <td>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7.6원</u></td> </tr> <tr> <td>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1.0원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	<u>79.7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92.1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93.0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<u>95.4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51.9원</u>	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<u>97.6원</u>	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91.0원</u>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	78.4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90.2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90.7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92.6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46.1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94.2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88.5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	<u>79.7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92.1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93.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<u>95.4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51.9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<u>97.6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91.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